

심사보고서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서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9
----------	-----

2016. 7. 23.(목)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6년 6월 29일

다. 회부일자 : 2016년 6월 30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7월 13일

- 제34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진형 행정국장)

가. 제안사유

-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내 청년창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기관인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 민간기관의 전문 창업육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베이스캠프 운영관리를 「충청북도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 추진계획

- 수탁기간 : 2016. 7월 ~ 2017. 12월 (1년 6개월)
- 수탁기관 :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수탁방법 : 공모선정
- 위탁사무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 예비·초기 창업자 창업공간 제공 및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자문기구” 및 “협의회” 운영
 - 기타 도내 예비·초기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향후계획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고 : '16. 7월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16. 8월
- 민간위탁 기관 심의·선정 : '16. 8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 '16. 8월

3. 검토보고 요지

- 이번 동의안은 도내 우수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청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베이스캠프의 운영관리를 민간기관의 전문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취업난, 주거난, 부채 등 총체적 난관에 처해 있는 청년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 충청북도도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창업지원 등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청년창업 지원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청, 교육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2014년 9월부터 전국 17개 지역의 18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설치되어 창업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창업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충북의 경우 충북테크노파크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서 창업 동아리 지원 등 청년창업에 관한 지원 사업을 진행 중임.

- 청년창업 지원은 창업 실무교육과 전문가 컨설팅 등 교육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기관이 담당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에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에 이견이 없음.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실업해소 차원에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나 사회 안전망 확보 없는 청년창업 지원은 단기간에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효과는 있겠으나 높은 폐업율과 그로 인한 위험부담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청년창업 베이스캠프'의 운영방향과 사업기간, 예산투입, 지역 대학이나 충북테크노파크,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과 업무협력을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41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6월 29일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419

제출연월일 : 2016년 6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청년 실업 해소 및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도내 청년창업의 체계적 육성·지원 기관인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 민간기관의 전문 창업육성 프로그램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베이스캠프 운영관리를 「충청북도 일자리창출 촉진 지원 조례」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나. 추진계획

- 수탁기간 : 2016. 7월 ~ 2017. 12월 (1년 6개월)
- 수탁기관 : 창업기업 육성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 수탁방법 : 공모선정
- 위탁사무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 예비·초기 창업자 창업공간 제공 및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자문기구” 및 “협의회” 운영
 - 기타 도내 예비·초기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향후계획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고 : '16. 7월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16. 8월
- 민간위탁 기관 심의·선정 : '16. 8월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 '16. 8월

3. 참고사항

가.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나. 관계 법령 : 붙임



- 예비·초기 창업자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추진계획

- 예비·초기 창업자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추진계획

- 도내 우수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초기 청년창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 베이스캠프를 구축하고,
- 베이스캠프의 운영관리를 민간기관의 전문 기업육성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10조
 -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위탁대상 사무 및 도의회 동의 규정

2 그간 추진경과

- 베이스캠프 예산확보 : 300백만원(도비) ※ '16. 제1회 추경
- 도내 창업지원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 충북대·교통대 창업지원단장 (박태형·곽윤식 교수)
 - 우수아이템 보유 창업가를 발굴·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충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장 최순식
 - 창업초기 기초 단계부터 체계적인 창업 프로그램 운영 필요
- 운영사례 조사
 - (관교) 스타트업 캠퍼스 ➡ 운영비 연20억 / 상시근무자 26명
 - 창업→성장→해외진출 지원 / 국제변호사, 변리사, 투자전문가 상주
 - (경기) G-베이스캠프, 운영비 5억 / (경북) 청년CEO육성, 운영비 5억
 - 창업에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들의 개방형 창업공간 및 사업화 지원
 - 지역 유망 청년창업가의 창업공간 및 창업활동비 지원
 - 도 보육센터(16) 및 충북TP : 창업지원 프로그램운영, 시제품제작 지원 등

- 청년창업 유관기관 전문가 방향설정 간담회 (정무부지사 주제)
 - 도 최초 청년창업 지원 시책으로 의미 있고, 긍정적 측면이 많음
 - 다양한 방법의 창업지원 체계 구축 및 창업 성공을 제고 필요
 - 창업전문가 협의회 구성, 주기적 성과보고 및 발전방안 논의

3 운영방향

- 창업성공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청년창업벨트 구축
- 예비·초기 창업자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해 초기창업 지원기관 구축
 - ↳ 민간기관 전문 창업육성 프로그램 활용



4 추진계획

① 사업개요

- 사업명 : 청년창업 베이스캠프
- 사업비 : 300백만원 (도비100%)
- 사업기간 : 2016. 7월 ~ 12월 (6개월)
- 추진방법 : 민간위탁 (공개모집)
- 설치장소 : 위탁기관 내 별도장소 (50평형 정도)
- 지원규모 : 25개 예비·초기 청년창업자

② 세부 운영계획

- 예비창업자 모집 : 공개모집 + 도내 창업 유관기관 추천 병행
 - 도내 창업지원기관 사업 신청자 및 아이템경진대회 우수자 집중 홍보
- 주요지원 내역
 - 창업자 창업(공동)공간 제공 : 25개 예비·초기 창업자
 - 창업지원(개별 600만원) : 사업화등록, 특허출원, 정보활동비 등
 - 창업전문가 배치(상주) : 예비창업자 애로사항 즉시 해결 지원 등
 - 창업경험자 및 창업보육센터 보육매니저 등 유경험자 채용(1명)
 - 프로그램 운영 : 전문가 그룹컨설팅, 창업실무교육, 네트워킹데이 등
 - 창업 전문가(변호사,노무사 등)로 구성된 “창업지원 자문기구” 운영
 - 창업 유관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구성·운영(2개월 주기)
- 운영방법
 - 6개월 과정 시범운영 후 17년도부터 10개월 과정으로 확대운영
 - 2개월 주기 성과보고회 개최 : 성과 및 노력정도 미흡시 퇴소
 - 결원 발생(퇴소자 등)시 대기자 및 재공고 추가 선발

⑤ 향후일정

- 베이스캠프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6. 7월
- 베이스캠프 운영관리 민간위탁 공고 : ‘16. 7월
- 수탁기관선정심의회 구성 및 심의 : ‘16. 8월
 - 구성인원 : 7명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
 - 심의·선정
 - 심의사항 :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적격성 등 종합평가
 - 운영사항 : 현장(선택) 및 서면평가 후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 ‘16. 8월

관 계 법 령 발 취

■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제5조, 제10조)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 노인,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사업
2. 청년층 등 생산적·경제적 일자리 창출사업
3.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